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4. 22)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

□ 제안이유

-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 대행사업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며, 세출의 용도에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비 및 수수료 등을 반영함(안 제4조제10호·제11호 및 제5조제6호·제9호 신설).

나.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는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납부 받아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등으로 구분함(안 제7조 신설).

다.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행사업비의 산정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과 체납할 때의 강제징수 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대행사업비의 산정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과 체납할 때의 강제징수 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대행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 본 조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음.
○	제4조제5호의 대행사업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기반시설 설치시 대행사업자가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대행사업비”(이하 “대행사업비”이라 한다)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시장이 대행하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6.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퍼센트
4. 국·도비보조금
5. 대행사업비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입금, 용자회수금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
10.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11.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 등의 매입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 및 수수료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여비 등
 8. 특별회계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경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비
 10.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홍보, 자문, 위원회 수당 등
 11.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운용)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지구별로 관리한다. 다만, 지구별로 구분되지 않는 세입 및 세출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①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납부 받아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법 제2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간선시설에 한한다.

③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범위는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대행사업비의 부과) ①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기반시설 부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 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비의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2년간 4회 균등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최초 분양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분할납부계획서를 분양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할 경우 대행사업비의 납부 예정금액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사업비 징수) ① 시장은 대행사업비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분양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신고, 준공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강제징수 및 연체이자)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체납할 때에는 강제징수 및 연체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제징수 및 이자율은 「지방세법」 등을 따른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7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대행사업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며, 세출의 용도에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비 및 수수료 등을 반영함(안 제4조제10호·제11호 및 제5조제6호·제9호 신설).

나.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는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납부 받아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등으로 구분함(안 제7조 신설).

다.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대행사업비의 산정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과 체납할 때의 강제징수 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

□ **첨 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대행사업비”(이하 “대행사업비”이라 한다)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시장이 대행하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6.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퍼센트
4. 국·도비보조금
5. 대행사업비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입금, 융자회수금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
10.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11.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 등의 매입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 및 수수료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여비 등
 8. 특별회계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경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비
 10.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홍보, 자문, 위원회 수당 등
 11.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운용)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지구별로 관리한다. 다만, 지구별로 구분되지 않는 세입 및 세출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①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납부 받아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법 제2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간선시설에 한한다.

③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범위는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대행사업비의 부과) ① 시장이 대행사업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기반시설 부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 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비의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2년간 4회 균등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최초 분양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분할납부계획서를 분양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할 경우 대행사업비의 납부 예정금액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사업비 징수) ① 시장은 대행사업비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분양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신고, 준공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강제징수 및 연체이자)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체납할 때에는 강제징수 및 연체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제징수 및 이자율은 「지방세법」 등을 따른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시행자) ①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26조 (비용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①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재정비축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축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축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비축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축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도시재정비축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전기시설 :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재정비축진지구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재정비축진구역(이하 "개별필지등"이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3. 가스공급시설 :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축진구역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재정비축진지구 안의 개별필지등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5.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시설, 케이블시설은 재정비축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최초 단자까지의 시설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라 함은 재정비축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축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의 중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방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현행 조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8. 06. 16 조례 제23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4.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퍼센트
5. 차입금
6.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9.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및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준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6.16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